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11명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김재우 · 김근한 · 김낙관 · 김원섭
김정도 · 박교상 · 신용하 · 양진오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추은희
의원(12명)

1. 제안이유

온라인 서점 활성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지역서점 요건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과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 요건)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구미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2. 구미시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 ② 유통사, 도매업,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등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활성화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사업
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단,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
3.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5.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독서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6.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7.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 사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서점 작가강연 등을 위한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작가초청 강연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20,000
작가강연	1,000,000원×20명=20,000,000	20,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시립중앙도서관 김명화
연 락 처	054-480-4665